

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30] [대통령령 제35783호, 2025. 9. 30, 일부 개정]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8호, 2025. 10. 1, 타법 개정]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생 략)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통계청장 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8.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 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생 략)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③ 통계청장 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 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계청장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통계청장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통계청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청 과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운영과 개선	2. 국가데이터처 와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운영과 개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통계청장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통계청장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① (생 략)	제16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통계청장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 통계청장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①·② (생략)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통계청장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통계청장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① 통계청장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 에게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총리령 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통계청장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 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 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 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계청장 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통계청장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9조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 이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 이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통계청장 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⑥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 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절차) ① 통계청장 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통계청장 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사유 및 내용) ① 통계청장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수정 사유 및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 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통계청장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 에게 제공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공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 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점검 결과를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점검 결과를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통계청장 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 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 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생 략)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등록부 자료가 교육·연구 활동에 활용되거나 국가통계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생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제29조의3제3항·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제29조의3제3항·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② (생략)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생략)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 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 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 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 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 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관리·제공의 대상·범위·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관리·제공의 대상·범위·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략)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